

# 심 사 보 고 서

○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76
----------	-----

2015. 12. 1.(화)  
건설소방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15년 10월 30일

다. 회부일자 : 2015년 11월 4일

라. 상정일자 : 2015년 11월 25일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가. 제안이유

-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을 준용하여 도로점용료 감면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상위법인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 조항 변경(안 제1조, 제3조제1항, 제3조제4항, 제3조제5항)
- 연간 도로점용료 50만원 초과 시 분할납부할 경우 이자율 조정  
(안 제3조제2항)
- 도로점용료의 감면 비율 및 기준 조항 신설(안 제3조제6항)

## 3. 검토보고 요지

(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 김학두)

###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근거조항을 현실화하고,
- 도로점용료 부과 기준을 조정하며, 점용료 감면기준을 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상위법령인 「도로법」 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문을 현실화하고,
- 점용료 이자를 산정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따라 이자를 산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조문은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이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라. 검토의견

-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조례 조문을 정비하고,
-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을 준용하여 도로점용료 감면조항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로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를 “「도로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을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매년도 개시 후”를 “매 회계연도 시작 후”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잔액”을 “남은 금액”으로,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인다”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법 제42조제3호”를 “법 제68조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84조”를 “법 제6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법 제6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도로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3조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4조 중 “10퍼센트”를 “100분의 10”으로, “「도로법 시행령」 제44조”를 “영 별표 4”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p>이 경우 잔액에 대하여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인다.</p> <p>③ (생략)</p> <p>④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42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p> <p>⑤ 법 제8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p> <p>&lt;신 설&gt;</p>	<p>----- 남은 금액 -----</p> <p>「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p> <p>-----.</p> <p>법 제68조제3호 -----</p> <p>-----.</p> <p>⑤ 법 제66조제2항 -----</p> <p>-----</p> <p>-----</p> <p>-----</p> <p>-----</p> <p>-----</p> <p>-----</p> <p>-----</p> <p>-----.</p> <p>⑥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법 제6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3조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p>

현행	개정안
<p>제4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u>10퍼센트</u>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u>도로법 시행령</u>」 제44조의 점용료조정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p>	<p>제4조(점용료의 조정) ----- ----- ----- ----- <u>100분의 10</u> ----- ----- ----- <u>영 별표 4</u> ----- ----- -----.</p>

## 관계법령

### □ 도로법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도로점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3. 그 밖에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도로점용을 종료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에 따른 등기정보자료 및 「건축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④ 점용료의 산정기준,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반환 방법 등 점용료의 징수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제23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61조제3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해당 일반경쟁에 부친 때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시한 금액을 점용료로 부과한다. 다만, 그 점용료는 제4항에 따라 산정된 점용료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2015.1.28>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4.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6.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7.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 □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①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1조제7항에서 같다)에서 징수하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외의 도로에서 징수하는 점용료는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4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별표4]

점용료 조정산식(제69조제3항 관련)

연간 점용료의 증가율(%)	적용 증가율(%)	납부할 점용료
1. 10 이상 20 미만	10	전년도 점용료 × 1.10
2. 20 이상 50 미만	14	전년도 점용료 × 1.14
3. 50 이상 100 미만	18	전년도 점용료 × 1.18
4. 100 이상 200 미만	22	전년도 점용료 × 1.22
5. 200 이상 500 미만	26	전년도 점용료 × 1.26
6. 500 이상	30	전년도 점용료 × 1.30

제71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점용료 납부 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 도로관리청은 그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⑥ 도로관리청은 제5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⑦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외의 도로에 관한 점용료의 반환 절차·방법 등 점용료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제5항 및 제6항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3조(점용료의 감면) ① 법 제68조제1호에 따른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으로 한다.

② 법 제6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 법 제68조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68조제1호, 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
2. 법 제68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3. 법 제68조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의 2분의 1 감액
4. 법 제68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의 10분의 1 감액

## □ 국유재산법 시행령

### 제30조(사용료의 납부시기 등)

③ 법 제32조제2항 전단에 따라 사용료를 나누어 내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 6회 이내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총괄청이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고시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3.4.5.>